

제420회 임시회

'24. 9. 4.(수)

검 토 보 고 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정책복지위원회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충청북도지사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4년 8월 23일
- 회부일자 : 2024년 8월 26일

3. 제안이유

-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지방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충북도의회 의결을 얻어 도세를 감면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24년 7월 호우로 인해 주택 등 건축물의 피해(전파, 반파, 침수 등)를 입은 도내 모든 시·군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 피해 건축물에 부과되는 2024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100% 면제 하고,
- 납부된 면제 대상 도세는 환급하며, 본 안건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 주민에게도 본 감면안을 준용함.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충북지역 일부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그 외 시·군 주민 또한 상당한 피해를 입어 도세인 지방세 감면을 통한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 필요성이 제기됨.

* 옥천군, 영동군

- 충북도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 건축물 등에 부과되는 2024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중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과세대상에 한해 해당 지방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나. 감면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다. 감면대상

- '24년 7월 집중 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의 피해를 입은 도내 주민
 - ※ 피해구분 기준은 2024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에 의함

- 피해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2024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대상으로 하며 면제 추계 세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건, 천원)

합 계						옥 천						영 동					
합 계		주택		건축물		합 계		주택		건축물		합 계		주택		건축물	
간수	금액	간수	금액	간수	금액	간수	금액	간수	금액	간수	금액	간수	금액	간수	금액	간수	금액
76	4,160	39	611	37	3,549	48	2,302	28	348	20	1,954	28	1,858	11	263	17	1,595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자연재난인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 본 동의안 의결로 피해지역 도민들의 납세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한 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